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II: 청소년수련관 평가편람

- ▶ 연구책임자 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 ▶ 공동연구자 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한도희(여성가족부 · 전문위원)
김영애(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연구위원)
김혁진(청소년지원네트워크 · 연구위원)
김인규(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팀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목 차

I. 평가개요	1
II. 평가지표별 편람	5
1. 지표 1.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적절성	7
2. 지표 2.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적절성	8
3. 지표 3. 계획 수립시 수요자 요구조사 반영 여부	9
4. 지표 4. 기관운영을 위한 법적 기준 준수 여부	10
5. 지표 5. 예산운영의 체계성	11
6. 지표 6. 상근인력 확보율	12
7. 지표 7. 상근 청소년지도사 확보율	13
8. 지표 8. 각종 전문지도 관련 자격증 보유 수	15
9. 지표 9. 청소년지도직 직원의 각종 전문연수 참여	16
10. 지표 10. 시설규모대비 청소년 이용인원	17
11. 지표 11. 전체 이용자 대비 연간 청소년 이용률	19
12. 지표 12.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20
13. 지표 13. 청소년에 의한 의사결정 반영도	21
14. 지표 14. 청소년동아리 수	22
15. 지표 15.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비	23
16. 지표 16.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24
17. 지표 17.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수	25
18. 지표 18.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 정도	26
19. 지표 19. 학교와의 연계 사업 실적	28
20. 지표 20. 대외 홍보실적	29
21. 지표 21. 시설운영 관련 규정의 적절성	31
22. 지표 22. 연간 시설 활용률	32
23. 지표 23. 시설 배치의 적절성	33

24. 지표 24. 안전관리 수준	39
25. 지표 25. 안전관리 보험가입 여부	46
26. 지표 26. 위생관리 수준	47
27. 지표 27.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조사 반영 여부	48
28. 지표 28. 프로그램 성과평가 실시 여부	49
29. 지표 29. 기관 구성원의 개선 노력 정도	50
30. 지표 30. 기관장의 기관발전 노력 정도	51
31. 지표 31. 특화사업(특화프로그램) 성과보고서	52

제 1 장



평 가 개 요

제 1 장 평 가 개 요

○ 평가편람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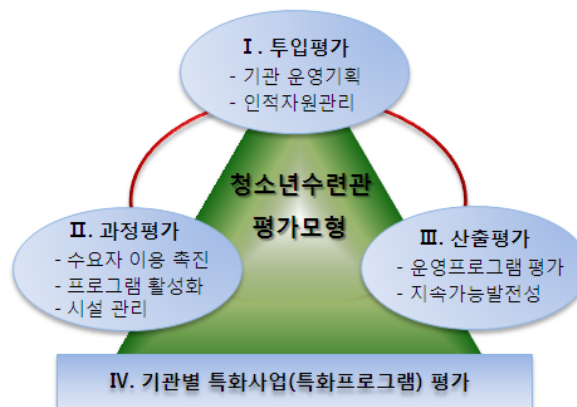
- 본 평가편람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평가 지침서로써 2011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고유연구과제인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의 평가모형 시범적용을 통해 연구보고서와 함께 개발된 것으로 2009년도의 청소년수련관 평가를 기초로 수정·보완되었다.

○ 평가의 목적

- 본 청소년수련관 평가모형을 통한 시설(기관)의 질 관리를 통해 청소년수련관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의 주요 기반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 평가모형의 기본 틀

- 본 청소년수련관 평가모형의 기본 틀은 Stufflebeam의 CIPP모형을 이론적 기초로 하여 청소년수련관의 설립배경과 취지를 고려하여 IPP모형으로 수정하였다. 평가모형은 전체 3단계(Input Evaluation, Process Evaluation, Product Evaluation)와 특화사업 평가로 구성되어 다음과 같이 총 4개 대영역과 8개 중영역, 그리고 31개 평가지표로 설계되었다.



○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대영역	중영역	평가지표
Ⅰ. 투입평가 (Input Evaluation)	기관 운영기획	1.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적절성
		2.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적절성
		3. 계획 수립시 수요자 요구조사 반영 여부
		4. 기관운영을 위한 법적 기준 준수 여부
		5. 예산운영의 체계성
	인적자원 관리	6. 상근인력 확보율
		7. 상근 청소년지도사 확보율
		8. 각종 전문지도 관련 자격증 보유 수
		9. 청소년지도직 직원의 각종 전문연수 참여
Ⅱ. 과정평가 (Process Evaluation)	수요자 이용 촉진	10. 시설규모대비 청소년 이용률
		11. 전체 이용자 대비 연간 청소년 이용률
		12.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13. 청소년에 의한 의사결정 반영도
		14. 청소년동아리 수
	프로그램 활성화	15.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비
		16.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17.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수
		18. 지역자원 연계·협력 정도
		19. 학교와의 연계사업 실적
	시설 관리	20. 대외 홍보실적
		21. 시설운영 관련규정의 적절성
		22. 연간 시설 활용률
		23. 시설 배치의 적절성
		24. 안전관리 수준
		25. 안전관리 보험가입 여부
Ⅲ. 산출평가 (Product Evaluation)	운영프로그램 평가	26. 위생관리 수준
		27.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조사 반영 여부
	지속가능 발전성	28. 프로그램 성과평가 실시 여부
		29. 기관 구성원의 개선 노력 정도
Ⅳ. 특화사업평가	기관별 특화사업 우수성	30. 기관장의 기관발전 노력 정도
		31. 특화사업(혹은 특화프로그램) 성과보고서 평가

제 2 장

평가지표별 편람

제 2 장 평가지표별 편람

▶ 지표 1.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적절성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전용 시설로써 역점사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설운영 발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청소년수련관 중·장기계획 등
- ② 평가방법 : 서면자료 평가, 평가위원단의 현장실사 (자료 확인 및 면담)
- ③ 평가기간 : 2009년 1월 ~ 2011년 12월
- ④ 평점기준 : 평가위원의 5단계 평정 척도 (원점수 범위 1 ~ 5점)
 - 매우미흡(1) : 중·장기계획 없음
 - 미흡(2) : 중·장기계획 미비(내부결재 없음)
 - 보통(3) : 중·장기계획 수립(내부결재)
 - 우수(4) : 중·장기계획 체계적 수립(예산계획 포함)
 - 매우우수(5) : 중·장기계획 수립 우수(내부결재, 예산계획 포함, 청소년의견 반영)
- ⑤ 평가요소
 -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수립 : 목적, 목표, 기본추진방향, 예산, 평가 등 포함여부(미션, 비전, 전략 등 포함)
 -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청소년참여) 운영계획 및 의견반영 여부 확인
 - 최근 개관(원)시설인 경우, 개관(원)시점 중·장기계획 확인

제출 증빙자료 1	1. 정관 2. 중장기(3~5년)발전계획서 3. 2009년, 2010년 연간운영계획서 * 최근 개관(원)시설인 경우, 개관(원)시점 연간운영계획서
현지실사 준비자료	1. 정관, 중장기 및 연간운영계획서 2. 관련 회의 개최 실적 자료

▶ 지표 2.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적절성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전용시설로써 매년 적절한 운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연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시설 운영에 적용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연간운영계획서 등
- ② 평가방법 : 서면자료 평가, 평가위원단의 현장실사(자료확인 및 면담)
- ③ 평가기간 : 2009년 1월 ~ 2011년 12월
- ④ 평점기준 : 평가위원의 5단계 평정 척도(원점수 범위 1~5점)
 - 매우미흡(1) : 연간운영계획서 미 수립
 - 미흡(2) : 연간운영계획서 수립(내부결재 없음)
 - 보통(3) : 연간운영계획서 수립(매년 수립 및 내부결재)
 - 우수(4) : 연간운영계획서 수립(전년도 사업평가 반영여부)
 - 매우우수(5) : 연간운영계획서 수립(전년도 사업평가 반영여부, 청소년의견반영 여부)
- ⑤ 평가요소
 - 연간운영계획 수립여부 및 내용 수준
 - 청소년수련시설로서 발전목표의 적절성, 계획내용의 현실성 및 필요성 등
 - 최근 개관(원)시설인 경우, 개관(원)시점 연간운영계획서 확인

제출 증빙자료 1	1. 정관 2. 중장기(3~5년)발전계획서 3. 2009년, 2010년 연간운영계획서 * 최근 개관(원)시설인 경우, 개관(원)시점 연간운영계획서
현지실사 준비자료	1. 정관, 중장기 및 연간운영계획서 2. 관련 회의 개최 실적 자료

▶ 지표 3. 계획 수립시 수요자 요구조사 반영 여부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예상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수요자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계획 수립시 고려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프로그램 평가결과 반영 실적 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자료 평가, 평가위원단의 현장실사(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평가위원의 5단계 평정 척도(원점수 범위 1~5점)
 - 매우미흡(1) : 수요자 요구조사 미실시
 - 미흡(2) : 수요자 요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분석 미실시
 - 보통(3) : 수요자 요구조사 실시 및 분석 실시
 - 우수(4) : 수요자 요구조사 실시 및 체계적 분석 실시
 - 매우우수(5) : 수요자 요구조사결과 체계적 분석 및 반영
- ⑤ 평가요소
 - 프로그램 평가결과 반영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확인(예: 수정된 지도안 등)
 - 프로그램 평가 실시 현황 및 결과분석 자료
 - 프로그램 평가 결과에 대한 반영 노력과 실적
 -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단순 만족도 조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제출 증빙자료 2	1. 수요자 요구조사 계획서 2. 수요자 요구조사 결과 자료 3. 수요자 요구조사 결과 반영 증빙 자료
현지실사 준비자료	1. 수요자 요구조사 계획서 2. 수요자 요구조사 결과 자료 3. 수요자 요구조사 결과 반영 증빙 자료

▶ 지표 4. 기관운영을 위한 법적 기준 준수 여부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관은 법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운영대표자 자격관련 증빙서류, 청소년활동인증제 인증실적, 각종 포상·수상실적 등
- ② 평가방법 : 서면자료 평가, 평가위원단의 현장실사(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평가위원 간 합의하여 평점 부여
- ⑤ 평가요소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미보유 감점 2점 부여
 - 운영대표자 자격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명시한 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감점 2점 부여

[운영대표자 자격기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 ①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6.6.12>

1. 1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2. 2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3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자격증소지자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6.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7. 제6호외의 공무원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②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출 증빙자료 3	1.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2. 운영대표자 자격과 관련 증빙자료
현지실사 준비자료	1.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2. 운영대표자 자격과 관련 증빙자료

▶ 지표 5. 예산운영의 체계성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관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절성 그리고 결산의 투명성을 기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예·결산 관련 규정, 예산서 및 결산서, 예산 운용 관련 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자료 평가, 평가위원단의 현장실사(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평가위원의 5단계 평정 척도 (원점수 범위 1~5점)
 - 매우미흡(1) : 예·결산 관리규정 및 문서(전산)화 되어 있지 않고, 예산편성 결산의 적절성과 투명적 운영의 결여
 - 미흡(2) : 예·결산 관리규정 및 문서(전산)화가 이루어져 있음
 - 보통(3) : 예·결산 관리규정 및 문서(전산)화가 이루어져 있고, 내부감사 실시
 - 우수(4) : 예·결산 관리규정 및 문서(전산)화가 이루어져 있고, 내·외부감사 실시
 - 매우우수(5) : 예·결산 관리규정 및 문서(전산)화가 이루어져 있고, 내·외부감사 실시하고 인터넷 및 신문 등 외부공개(외부공개 : 지방자치단체 보고는 해당사항이 아님)
- ⑤ 평가요소
 - 예·결산 관련 규정의 유무 및 내용의 적절성 정도
 - 예산 수립 및 집행, 결산과정의 전산화 처리 여부
 - 지출 부분의 예산 관리 방법(카드 사용, 처리 절차 효율성 등)
 - 예산서·결산서의 작성 및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정도
 - 외부 회계전문가(기관)의 감사 실시 여부
 - 외부공개는 자발적 외부공개를 말함

제출 증빙자료 4	1. 예산 및 결산 관련 규정·지침서 2. 2010년 예산 및 결산서 3. 기타 자원 발굴 증명자료
현지실사 준비자료	1. 예산 및 결산 관련 규정·지침서 2. 2010년 예산 및 결산서

▶ 지표 6. 상근인력 확보율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전체 직원 수 대비 상근(정규) 직원 수의 비율을 높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직원명부, 인사기록카드(성범죄자 신원확인 여부), 근로계약서,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 ② 평가방법 : 서면자료 평가, 평가위원단의 현장실사(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12월 31일 현재
- ④ 평점기준 : 인력확보율(※ 추후 실제 평가시 정규분포기준 5점 척도 평정)

$$\text{인력확보율} = \frac{\text{상근 직원 수}}{\text{전체 직원 수}} \times 100$$

⑤ 평가요소

-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정규직 상근 인력의 확보 수준
- 전체직원 적용 범주 :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상근(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상근(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모두 포함
- 상근(정규, 무기계약)직원 적용 범주 :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계약체결 시 상근(정규, 무기계약)직원으로 근로계약체결 한 직원
- 청소년수련관 내 위탁 시·도(시·군·구)의 청소년지원센터,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소속 및 파견 직원의 경우 모두 제외
- 상근직은 정규직, 무기계약직을 말함

제출 증빙자료 5	1. 직원명부 2. 직원별 근로계약서 사본 3. 고용보험가입증명서
현지실사 준비자료	1. 직원명부 2. 인사기록카드(성범죄자 신원확인 여부) 3. 근로계약서 4. 4대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 지표 7. 상근 청소년지도사 확보율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령에 의한 법정배치지도사 수와 대비하여 상근으로 근무하는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의 비율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직원 인사기록카드 등 직원의 현황, 인사 관련 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자료 평가, 평가위원단의 현장실사(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12월 31일 현재
- ④ 평점기준 : 상근 청소년지도사확보율 = $\frac{\text{상근지도사수}}{\text{법정배치지도사수}} \times 100$
 - 매우미흡(1점) : 80% 미만
 - 미흡(2) : 80 ~ 99%
 - 보통(3) : 100%
 - 우수(4) : 101 ~ 120%
 - 매우우수(5) : 120% 초과
- ⑤ 평가요소
 - 상근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비율
 - 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직원(PM, SM),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인력 중 상근(정규, 무기계약)직원으로 전환한 직원과 기존 청소년수련관 상근(정규, 무기계약)직원이 인사발령으로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업무를 담당하는 상근직원 중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있을 경우 포함
 - 청소년수련관 내 위탁 시·도(시·군·구)의 청소년지원센터,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소속 및 파견 직원의 경우 모두 제외
 - 상근(정규, 무기계약)직 : 근로계약체결 시 상근(정규, 무기계약)직원으로 근로계약체결 한 직원

- 비상근(비정규, 계약)직 : 근로계약체결 시 비상근(비정규, 계약)직원으로 근로 계약체결 한 직원
- 상근직은 정규직, 무기계약직을 말함
- 법정배치기준 : 청소년기본법 제23조제1항,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근거한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 별표 5를 말함.

1급청소년지도사 1인, 2급청소년지도사 1인, 3급청소년지도사 2인 이상을 두되, 수용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인을 초과하는 250인 마다 1급, 2급 또는 제3급 청소년지도사 중 1인 이상을 추가로 둔다.

제출 증빙자료 5	1. 직원명부 2. 조직도 3. 업무분장표 4. 직원별 근로계약서 사본 5. 고용보험가입증명서
현지실사 준비자료	1. 직원명부 2. 인사기록카드(성범죄자 신원확인 여부) 3. 근로계약서 4. 4대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 지표 8. 각종 전문지도 관련 자격증 보유 수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지도직 직원들이 분야별 전문적인 청소년활동 지도에 필요한 자격증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청소년지도직 직원들의 자격증 수
- ② 평가방법 : 서면자료 평가, 평가위원단의 현장실사(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12월 31일 기준
- ④ 평점기준 : 전문자격증 보유 수(※ 추후 실제 평가시 정규분포기준 5점 척도 평정)

청소년지도직의 보유 전문자격증 보유 수 = [개]

⑤ 평가요소

- 청소년지도직 직원(상근, 비상근 모두)의 청소년활동 관련 전문자격증 수
- **전문자격증 기준 : 청소년지도와 조금이라도 관계있으면 인정, 자격증 종수가 아닌 보유 수를 말하고 “국가공인 자격증”만 인정함**
- 청소년지도직 직원(상근, 비상근 포함)의 청소년활동 관련 전문자격증 수
- 청소년수련관 내 위탁 시·도(시·군·구)의 청소년지원센터,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소속 및 파견 직원의 경우 모두 제외
- 청소년지도직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지도활동을 주 업무로 담당하는 인원을 말하며 주 업무가 행정관리·지원이나 시설관리인 인력은 제외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포함
- 운전면허증, 영양사, 조리사, 보일러기사 등 청소년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자격증은 제외

제출 증빙자료 6	1. 자격증 사본
현지실사 준비자료	1. 자격증 보유현황 2. 자격증 사본

▶ 지표 9. 청소년지도직 직원의 각종 전문연수 참여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지도직 직원들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지원하고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청소년지도직 직원들의 민간, 공공 연수 참여 경력 자료, 연수 참여 예산지원 현황 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자료 평가, 평가위원단의 현장실사(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연수 참여 횟수(※ 추후 실제 평가시 정규분포기준 5점 척도 평정)

청소년지도직 직원들의 연수 참여 횟수 = 횟수

⑤ 평가요소

- 청소년지도직 직원들의 관련 분야 교육연수 참여현황 수준
- 청소년지도직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지도활동을 주 업무로 담당하는 인원을 말하며 주 업무가 행정관리·지원이나 시설관리인 인력은 제외
- 자체 연수 실적 10명이 1회 참여 시 1건으로 인정, 외부연수에 3명이 참여하였을 경우 3건으로 인정
- 전문연수 범위 : 워크숍부터 인정
 - ※ 청소년수련관 내 위탁 시·도(시·군·구)의 청소년지원센터,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소속 및 파견 직원의 경우 모두 제외

제출 증빙자료 7	1. 직원 복리후생 및 교육연수 계획서 2. 자체교육 추진 실적 3. 외부교육 참여 실적 증빙자료
현지실사 준비자료	1. 직원 복리후생 및 교육연수 계획서 2. 자체교육 추진 실적 3. 외부교육 참여 실적 증빙자료

▶ 지표 10. 시설규모대비 청소년 이용인원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시설규모대비 연간 청소년이용자 수 비율을 높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청소년수련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연간 청소년이용자 수 (청소년이용자 현황 보고서, 근무일지) 등 증빙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자료 평가, 평가위원단의 현장실사(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12월 31일 기준
- ④ 평점기준 : 청소년이용 인원(※ 추후 실제 평가시 정규분포기준 5점 척도 평정)

$$\text{시설규모 대비 청소년이용 인원} = \frac{\text{연간 청소년이용자수}}{\text{활동공간면적}(m^2)} \quad [\quad \text{명}/m^2]$$

⑤ 평가요소

- 시설의 수용규모 기준 대비 이용자 수준
- 전체 이용자 수는 매일 매일의 수련관 내 이용인원(시설단위별, 프로그램 단위별 연인원)을 합산하되 중복은 제외
- 청소년 이용자 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거 등록된 활동시설(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장, 특성화활동장, 기타 실내활동장) 내에서 청소년지도자가 기획한 프로그램(사업)에 매일 매일 참여·활동한 청소년
- 청소년대상 강좌프로그램(사업)은 포함하되, 문화존 등 축제 및 캠프성 프로그램(사업)은 참석자수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있는 경우에 이용자 수 인정함
- 활동공간면적이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2 개별기준 가.청소년수련관 기준 중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장, 특성화활동장, 기타 실내활동장 면적으로 제한(단체사무실,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외부기관과의 MOU체결에 의한 각종 추진센터 등이 제외 된 활동공간 면적)

제출 증빙자료 8	1. 청소년수련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시설평면도 및 배치도 등
현지실사 준비자료	1. 청소년수련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시설평면도 및 배치도 등

▶ 지표 11. 전체 이용자 대비 연간 청소년 이용률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연간 전체이용자 수 대비 청소년이용자 수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연간 이용자 현황(이용자 기록 대장), 연간 청소년이용자 수
(청소년이용자 현황 보고서), 근무일지 등 증빙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자료 평가, 평가위원단의 현장실사(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연간청소년이용률(※ 추후 실제 평가시 정규분포기준 5점 척도 평정)

$$\text{전체이용자 대비 연간청소년이용률} = \frac{\text{연간 청소년이용자수}}{\text{연간 전체이용자수}} \times 100$$

- ⑤ 평가요소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규정에 근거한 법정 청소년 연령 이용자의 이용률 준수 여부
 - 전체 이용자 수는 매일 매일의 수련관 내 이용인원(시설단위별, 프로그램 단위별 연인원)을 합산하되 중복은 제외
 - 청소년 이용자 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거 등록된 활동시설(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장, 특성화활동장, 기타 실내활동장) 내에서 청소년지도자가 기획한 프로그램(사업)에 매일 매일 참여·활동한 청소년
 - 청소년대상 강좌프로그램(사업)은 포함하되, 문화존 등 축제 및 캠프성 프로그램(사업)은 참석자수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있는 경우에 이용자 수 인정함
 - 청소년수련관 내 야외활동 시설 참여 청소년은 프로그램(사업)계획에 의거 활동·참여 시 인정
 - 프로그램(사업)계획서 등 관련 근거자료가 없을 시 제외

제출 증빙자료 9	1. 청소년이용자 현황보고서
현지실사 준비자료	1. 이용자 기록대장 등 관련 증빙자료

▶ 지표 12.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운영계획서, 구성 인원, 회의록, 결과 보고서 등 증빙 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자료 평가, 평가위원단의 현장실사(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 매우 미흡(1) : 연 2회 이하 개최
 - 미흡(2) : 연 3 ~ 4회 개최
 - 보통(3) : 연 5 ~ 6회 개최
 - 우수(4) : 연 7 ~ 11회 개최
 - 매우우수(5) : 연 12회 이상 개최
- ⑤ 평가요소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 매회 참여율 50% 이상만 인정

제출 증빙자료 10	1.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계획서 및 운영규정 2. 청소년운영위원회 명단 3.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록
현지실사 준비자료	1.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계획서 및 운영규정 2. 청소년운영위원회 명단 3.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록

▶ 지표 13. 청소년에 의한 의사결정 반영도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제안들을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청소년운영위원회 결과보고서, 의견 반영 결과 증빙 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자료 평가, 평가위원단의 현장실사(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청소년 의사결정 반영률을 기준으로 평정

$$\text{청소년 의사결정 반영율} = \frac{\text{연간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반영한 건수}}{\text{연간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건의 건수}} \times 100$$

- 매우 미흡(1) : 50% 이하 반영
- 미흡(2) : 51 ~ 60% 반영
- 보통(3) : 61 ~ 70% 반영
- 우수(4) : 71 ~ 80% 반영
- 매우우수(5) : 81% 이상 반영
- ⑤ 평가요소
 - 건의 건수가 5건 이하는 매우 미흡으로 처리
 - 평가위원이 판단하기에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인 제안은 건의 건수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 예산이 투입된 반영 사례 1건은 2건으로 인정

제출 증빙자료 11	1. 건의 반영 결과 증빙 자료
현지실사 준비자료	1. 건의 반영 결과 증빙 자료 2. 기타 자료

▶ 지표 14. 청소년동아리 수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청소년동아리 등록대장 및 서류, 청소년동아리실 사용 대장, 청소년동아리 회의록 등 증빙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자료 평가, 평가위원단의 현장실사(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전체 청소년동아리 수(※ 추후 실제 평가시 정규분포기준 5점 척도 평정)

전체 청소년동아리 수 = [개]

⑤ 평가요소

- 연 6회 이상 모임 개최 실적이 있는 경우만 동아리로 인정
- 동아리 수가 5개 이하인 경우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
- 매회 청소년동아리 회원 참여율 50% 이상만 개최된 것으로 인정
- 청소년동아리 회원 수 및 질은 평가위원 재량

제출 증빙자료 12	1. 청소년동아리 등록현황
현지실사 준비자료	1. 청소년동아리 등록대장 및 서류 2. 청소년동아리실 사용 대장 3. 청소년동아리 회의록 등

▶ 지표 15.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비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청소년동아리활동 운영비 지원 내역 등 증빙서류
- ② 평가방법 : 서면자료 평가, 평가위원단의 현장실사(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12월 31일 기준
- ④ 평점기준 : 연간 청소년동아리 지원비(※ 추후 실제 평가시 정규분포기준 5점 척도 평정)

연간 청소년동아리 지원비 = [원]

⑤ 평가요소

- 동아리 수가 5개 이하인 경우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
- 내·외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비 모두 포함

제출 증빙자료 13	1. 동아리활동 운영비 지원내역 및 실적
현지실사 준비자료	1. 동아리활동 운영비 지원 내역 등

▶ 지표 16.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체계적으로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연간·분기별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 ② 평가방법 : 서면자료 평가, 평가위원단의 현장실사(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평가위원의 5단계 평정척도(원점수 1~5점)
 - 매우미흡(1) : 프로그램 운영계획 미 수립
 - 미흡(2) :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형식적 형태로 수립되어 있음
 - 보통(3) :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음(내부결재)
 - 우수(4) :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전년도 프로그램 평가결과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하여 수립됨
 - 매우우수(5) : 신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계획이 전년도 프로그램 평가결과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에 근거해 연간, 반기별, 분기별로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 ⑤ 평가요소
 - 전년도 프로그램 평가결과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에 근거한 반영 수준

제출 증빙자료 14	1.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2. 프로그램 개발실적현황 3. 프로그램 개발·운영위원회 명단
현지실사 준비자료	1. 프로그램 운영·평가 계획서 2. 프로그램 개발실적 자료 3. 프로그램 개발·운영위원회 운영실적(회의록 등)

▶ 지표 17.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수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관은 본연의 기능 수행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프로그램 현황 및 지도안 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자료 평가, 평가위원단의 현장실사(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수(※ 추후 실제 평가시 정규분포기준 5점 척도 평정)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수 = ()개 프로그램

⑤ 평가요소 :

- 활동 지도를 위한 지도안(계획)을 갖추고 있는 청소년용 프로그램만 인정
- 프로그램 관련 예산집행이 수반된 경우만 인정
- 동일 프로그램명으로 반복 운영된 프로그램은 1개로 인정
- 숙박형 프로그램은 1개의 프로그램으로 인정
- 성인 또는 유아 대상 프로그램은 제외
- 수련관내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의집이나 별도의 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제외

제출 증빙자료 15	1. 전체 프로그램 현황 표 2. 프로그램별 활동지도안(사업계획서)
현지실사 준비자료	1. 전체 프로그램 현황 표 2. 프로그램별 활동지도안(사업계획서)

▶ 지표 18.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 정도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관은 타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시설 운영, 활동 프로그램(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타 기관과 업무협력 계획 및 업무제휴 자료, 협력 사업실적 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자료 평가, 평가위원단의 현장실사(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평가위원의 5단계 평정척도(원점수 범위 1~5점)
 - 매우미흡(1) : 없음
 - 미흡(2) : 1 ~ 2개
 - 보통(3) : 3 ~ 4개
 - 우수(4) : 5 ~ 6개
 - 매우우수(5) : 7개 이상
- ⑤ 평가요소
 - 업무협력을 위한 시설 자체의 방향, 노력과 실적 수준
 - 업무제휴 계약 등 협력관계의 지속성, 충실성 수준
 - 사업 중심의 실제적인 협력 수준의 향상을 위한 대책과 협력 내용(관련 기관과의 공동 사업 추진 실적 및 사업내용의 협력 수준)
 - 협력기관수 : 업무협약체결과 공동사업수행을 말함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회원 등록도 인정(2011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준)
 - 청소년수련관 내 위탁 시·도(시·군·구)의 청소년지원센터,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관련 연계 실적 제외
 - 연계협력 기관수 중심 평가

제출 증빙자료 16	1. 지역자원연계 등 협력사업계획서 2. 협력제휴 증명자료(협약서 사본 및 공문서)
현지실사 준비자료	1. 협력사업계획서 및 추진실적 자료 2. 협력제휴 증명 자료 3. 기타 대외협력을 위한 실적 자료

▶ 지표 19. 학교와의 연계 사업 실적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관은 학교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학교와 연계 사업 실적 자료(협약서 및 문서)
- ② 평가방법 : 서면자료 평가, 평가위원단의 현장실사(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평가위원의 5단계 평정척도(원점수 범위 1~5점)
 - 매우미흡(1) : 2개 이하
 - 미흡(2) : 3 ~ 4개
 - 보통(3) : 5 ~ 6개
 - 우수(4) : 7 ~ 9개
 - 매우우수(5) : 10개 이상
- ⑤ 평가요소
 - 지역사회 학교와의 협력 사업 현황 및 실적 수
 - 단순한 시설 이용 보다는 프로그램 중심의 연계 협력
 - 학교와 사업실적 : 업무협약체결과 공동사업(CA활동, 동아리활동, 특기적성지원, 방과 후학교 연계, 전문인력지원 등)수행을 말함(단순한 대관 제외)
 - 청소년수련관 내 위탁 시·도(시·군·구)의 청소년지원센터,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청소년문화의집 관련 연계 실적 제외

제출 증빙자료 17	1. 학교연계 사업계획서 2. 학교와의 연계협력 증빙자료(공문서) 등
현지실사 준비자료	1. 학교연계 사업계획서 2. 학교동아리 연계 지원 사업 실적 3. 특별활동 및 특기적성활동 연계 지원 사업 실적 4. 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실적 등 증빙자료

▶ 지표 20. 대외 홍보실적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이용자에게 시설의 이용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홍보 대상별로 적절한 내용으로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인터넷홈페이지 운용실적, 홍보자료, 홍보실적 및 결과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자료 평가, 평가위원단의 현장실사(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평가위원의 5단계 평정척도(원점수 범위 1~5점)
 - 매우미흡(1점) : 인터넷 홈페이지 없고, 정기적 홍보 자료 없음
 - 미흡(2) : 포털사이트의 카페 운영 및 정기적 홍보 자료
 - 보통(3) : 인터넷 홈페이지(부정기적 업데이트) 있고, 정기적 홍보자료
 - 우수(4) : 인터넷 홈페이지(월별 업데이트) 있고, 정기적 홍보자료, 분기별 평균 1회 (연 4건 이상) 보도자료 실적
 - 매우우수(5) : 인터넷 홈페이지(주별 업데이트) 있고, 정기적 홍보자료, 월별 평균 1회 (연 12건 이상) 보도자료 실적
- ※ 가산점 : 홍보대상에 따른 홍보 방법의 적절성, 홍보자료 내용의 충실성을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 ⑤ 평가요소
 - 인터넷 홈페이지의 업데이트 활용 수준(업데이트 주기)
 - 홍보물 제작 현황 및 내용 수준
 - 홍보대상 특성에 따른 홍보방법과 홍보내용의 적절성 여부
 - 정기적 홍보 자료 : 주·월·분기별 팸플릿, 소식지, 신문 등 인쇄자료
 - 자체보도자료 작성도 실적으로 포함(내용은 평가위원 재량으로 판단)

제출 증빙자료 18	1. 홍보계획서 2. 각종 홍보자료 3. 보도 실적 자료(매체명/보도제목/보도일자 정리, 결과물 사본) 등
현지실사 준비자료	1. 홍보계획서 2. 홍보실적 자료 3. 기타 홍보 실적

▶ 지표 21. 시설운영 관련 규정의 적절성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보수, 인사, 직제, 복무 및 회계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시설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 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자료 평가, 평가위원단의 현장실사(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평가위원의 5단계 평정척도(원점수 범위 1~5점)
 - 매우미흡(1) : 시설운영 관련 규정 없음(수립 불투명)
 - 미흡(2) : 시설운영 관련 규정 형식적 수립(내부결재 없음)
 - 보통(3) : 시설운영 관련 규정 일반적 수립(이사회 승인 및 내부결재, 보수, 인사, 직제, 복무, 회계 규정중 일부 수립)
 - 우수(4) : 시설운영 관련 규정 우수하게 수립(수련관의 보수, 인사, 직제, 복무 및 회계 규정 전체에 대해 간소하게 수립)
 - 매우우수(5) : 시설운영 관련 규정 매우 우수하게 수립(기타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별도 규정 마련)
- ⑤ 평가요소
 - 시설 운영을 위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규정 현황
 - 시설운영규정 : 인사, 직제, 복무, 회계, 보수 규정 필히 포함
 - 시설관련 기준 준수, 객관적인 시스템구축여부, 투명성, 공정성
 - 위탁법인의 규정도 관련 내용이 확인되면 인정함
 - 별도규정이라 함은 문서관리규정, 시설관리규정,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말함

제출 증빙자료 19	1. 보수, 인사, 직제, 복무, 회계, 기타 관련규정 유무
현지실사 준비자료	1. 보수, 인사, 직제, 복무, 회계, 기타 관련규정집 자료

▶ 지표 22. 연간 시설 활용률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연간 운영 가능한 일수에 대비하여 실제로 운영하는 일수의 비율을 높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청소년수련관 내규, 운영계획서, 근무일지 등 증빙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자료 평가, 평가위원단의 현장실사(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연간 시설활용률(※ 추후 실제 평가시 정규분포기준 5점 척도 평정)

$$\text{연간 시설활용률} = \frac{\text{연간 실제운영일수}}{365\text{일}} \times 100$$

⑤ 평가요소

- 연간실제운영일수는 365일-휴관일수
- 시설개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한 일수는 제외(근거제시)

제출 증빙자료 20	1. 청소년수련관 내규 2. 근무일지
현지실사 준비자료	1. 청소년수련관 내규 2. 근무일지

▶ 지표 23. 시설 배치의 적절성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필요한 공간 및 동선을 확보하고, 청소년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하여 시설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수련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 현황, 개·보수 현황 자료 등 증빙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자료 평가, 평가위원단의 현장실사(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09년 1월 ~ 2011년 12월
- ④ 평점기준 : 평가위원의 5단계 평정 척도 (원점수 범위 1~5점)
 - 매우미흡(1) : 시설배치 및 쾌적성 둘 다 미흡
 - 미흡(2) : 시설배치 및 쾌적성 둘 중 하나 미흡
 - 보통(3) : 시설배치 및 쾌적성 둘 다 보통
 - 우수(4) : 시설배치 및 쾌적성 둘 중 하나 우수
 - 매우우수(5) : 시설배치 및 쾌적성 둘 다 우수
- ⑤ 평가요소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규정에 근거한 기준 미달 시 감점 1점
 - 시설 개·보수는 예산이 반영된 경우만 인정(2009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제출 증빙자료 21	1. 시설 총별 평면도 2. 개·보수 실적 현황
현지실사 준비자료	1. 시설 총별 평면도 2. 개·보수 실적 현황 3. 기타 관련 증빙 자료

[별표] <개정 2009.7.10>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제8조관련)**1. 공통기준****가. 일반기준**

구 분	기 준
(1) 입지	○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적합한 장소로써 수련시설은 다음의 입지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 일상생활권, 도심지 근교 및 그 밖의 지역 중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한다.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그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한다. - 유스호스텔 :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부근 및 그 밖의 지역중 청소년이 여행활동 시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한다.
(2) 구조	○ 시설 및 기구·설비 등은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수용정원에 적합한 면적과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설치기준	○ 주변 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존·활용하여야 한다. ○ 시설의 종류별로 개별기준에 정한 시설·설비를 설치하되, 그 설치기준은 개별기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 단위시설·설비기준"에 따른다. ○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폐교시설 등 기존시설을 활용한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관리시설	○ 관리실·사무실·안내시설 등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수련시설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기타시설	○ 입지여건·특성·자연환경 등에 따라 당해 수련시설의 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종류의 수련시설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시설·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6) 금지시설	○ 동일 건물 또는 당해 시설 안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설치예정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는 유흥주점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나. 단위시설·설비기준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기준에 따라 왼쪽 난의 시설·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오른쪽 난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구 분	기 준
(1) 실내집회장	○ 강당·회의실 등으로써 개별기준에서 정한 집회장 수용인원이 150인 이하인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1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0.8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그 면적의 합계가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 2 이상의 강의실 사이에 이동식 칸막이를 설치하여 이를 쉽게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한 경우 이를 실내집회장으로 볼 수 있다(개별기준에서 실내집회장을 두도록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 야외집회장	○ 무대, 확성설비 등 집회활동에 필요한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해당 집회장에 수용할 인원이 150명 이하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그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 운동장에 야외집회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구·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야외집회장으로 볼 수 있다.
(3) 체육활동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골프장업·골프연습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용 체육시설을 제외한다) 및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청소년의 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체육활동장의 설치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가 정하는 시설관계 공인규정 등을 준용한다(관람석 등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수련의 숲	○ 자연림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림지대로써 그 안에 야외탁자·장(長)의자·예술조형물·그늘집 등의 조경시설물과 휴게소 등을 설치하여 휴식 및 명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 자연체험장을 수림지대안에 설치한 경우로써 그 수림지대안에 조경시설물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수련의 숲으로 볼 수 있다.
(5) 특성화수련활동장	
(가) 문화적 감성 함양 활동장	○ 문화적 감성을 개발하고 정서를 순화하며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취미활동 등의 함양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극장·공연장·음악감상실·전시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과학 및 정보화 능력 함양활동장	○ 창조적 능력 · 탐구심 · 정보화능력 · 미래과학능력 등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써 컴퓨터실, 과학실습 · 자연관찰 · 천체관측시설, 요리실습 시설, 어류 · 조수사육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봉사과 협력정신 함양활동장	○ 인간존중의 정신 및 심성을 개발하고 정의감 · 상부상조정신 등을 배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써 자원봉사정보 및 활용센터, 자원봉사체험 연계네트워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라) 모험심과 개척 정신 함양활동장	○ 신체의 강건함 · 용기 · 인내심 · 탐험정신 · 도전의식 · 진취성 등을 키울 수 있는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써 탐험시설, 수상 · 해양 · 항공훈련시설, 영농시설, 산악자전거장, 개척물설치훈련장, 암벽등반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마) 전문적 직업능력 함양활동장	○ 직업 전문성, 현실적응능력 등을 배양하고 직업관 등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써 취업정보센터, 직업교육용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바) 국제감각 함양 활동장	○ 세계문화의 이해와 외국의 교류체험 및 한민족의 정체성 등을 고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써 국제교류관(국제회의실 · 접견실 · 회의실 · 친선교류실 등), 학습 · 정보관(청소년교육정보센터 등), 어학실습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사) 기타 특성화 활동장	○ (가)부터 (바)까지에서 규정한 분야 외의 환경의식 함양 등 특성화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활동장을 말한다.
(6) 자치활동실	○ 동아리활동 · 분임토의 등에 이용되는 시설로서 의자 · 탁자 등을 갖추어야 한다.
(7) 강의실	○ 1실당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칠판 · 교탁 · 책상 · 걸상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구 ·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책상면과 흑판면의 조도가 15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8) 생활관(유스호스텔의 숙박실을 포함한다)	○ 숙박실은 숙박정원 1인당 2.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생활관 또는 숙박실의 전체 숙박정원의 100분의 10(중학생) 또는 100분의 20(초등학생)을 추가한 인원을 해당 수련시설의 숙박정원으로 할 수 있다. ○ 채광과 통풍이 양호하여야 하며 지하실 등에 설치되어서는 아니된다. ○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정원의 100분의 10 이상 규모의 숙박실은 침대식으로 하여야 한다.

	○ 가족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 이상으로 구획된 침실과 거실, 주방 등을 갖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거실을 갖춘 경우에는 거실면적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을 숙박실의 면적으로 본다. ○ 생활관의 형태를 소규모로 분산 설치할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자용 숙박실을 청소년용 숙박실 근처에 배치하여야 한다. ○ 숙박실이 있는 층마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 샤워장 · 세면장을 설치하여야 한다(생활관을 소규모로 분산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층의 숙박실 전체에 화장실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동세탁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면장 · 샤워장 등을 세탁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구조 및 면적으로 한 경우에는 세탁실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야영지	○ 야영정원 1인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자가취사장 · 화장실 및 세면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야영지 주변에 그와 같은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평지 또는 환경사 지역으로서 절벽 · 급류 등 위험한 장소의 인근에 설치되어서는 아니되며, 홍수의 범람 · 해일 등 재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 배수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자연배수가 되지 아니하는 지반일 경우 배수로 또는 덮은 도랑 등을 설치하여 인공적으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0) 식당	○ 매식을 하는 식당 또는 집단급식소로서 급식인원 1인당 1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급식인원에 알맞는 조리기구 · 배식설비 · 식탁 · 의자 등의 기구 ·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 자가취사장	○ 배기가 잘 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화재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급수 · 배수설비, 개수설비, 오물처리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취사설비(가스레인지 또는 전열취사기구 등과 조리대 및 개수대를 말한다)와 식탁 · 의자 및 개별취사용구 · 부식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를 구비하여야 한다. ○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위생시설	○ 화장실은 수세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남 · 여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취사 및 음용에 공급되는 물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보건소에서 보건위생상 해가 없다고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13) 지도자실	○ 청소년지도자들이 수련활동 지도 등을 위한 준비실로 사용하는 실내공간으로 의자 · 탁자 등 필요한 기구 ·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4) 상담실	○ 내부의 장식·설비 등은 안락함이 느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응접세트 또는 의자·탁자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다수의 상담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양호실	○ 간단한 구급약품의 비치나 상병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약품 보관함·침대·침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관리실·사무실 등에 병설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별기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16) 휴게실	○ 이용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의자 및 탁자를 갖추어야 한다. ○ 공유면적에 의자 및 탁자를 배치하여 휴식장소로 이용할 경우에는 이를 휴게실로 볼 수 있다(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7) 물품보관시설	○ 물품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물품보관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18) 방송설비	○ 당해 수련시설안에서 안내방송 등을 할 수 있는 설비로서 주된 장치는 별도의 방송실에 설치하거나 관리실 등에 병설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청소년수련관

구분	기준
(1) 면적	○ 연건축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실내집회장	○ 1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체육활동장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자치활동실	○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 특성화수련활동장	○ 2개 이상의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상담실	○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휴게실	○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8) 위생시설	○ 수용정원에 적합한 화장실, 세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지도자실	○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0) 기타설비	○ 방송설비 및 공중전화를 갖추어야 한다.
(11) 수용정원	○ (3), (5)에 해당하는 시설(실내시설에 한한다)을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을 말한다.

▶ 지표 24. 안전관리 수준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시설안전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적합한 수준의 시설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시·군·구 및 안전점검 관계기관(소방서 등)에서 안전점검결과서, 자체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일지, 안전교육 참가 수료증 등 증빙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자료 평가, 평가위원단의 현장실사(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1월 ~12월
- ④ 평점기준 : 평가위원의 5단계 평정 척도 (원점수 범위 1~5점)
 - 매우미흡(1) : 안전관리계획 미 수립, 자체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관리대장 미 작성(둘 다 미흡)
 - 미흡(2) : 안전관리계획 수립, 자체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미 실시(둘 중 하나 미흡)
 - 보통(3) : 안전관리계획 수립, 자체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둘 다 양호)
 - 우수(4) : 안전관리계획에 의거 정기적 자체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결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매우우수(5) : 안전관리계획에 의거 자체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 실적이 있는 경우
- ⑤ 평가요소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의 2항의 수련시설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 2(수련시설의 안전점검)의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를 가지고 정기·수시로 자체적으로 실시
 - 안전관련 교육에 참여한 실적이 있으면 1점 가점 부여
 - 시·군·구 및 안전점검 관계기관(소방서 등)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노력이 없는 경우 1점 감점

제출 증빙자료 22	1. 안전관련 자료(안전관리계획서) 2. 안전교육대장 3. 안전교육 참여 수료증 4. 자체안전점검 결과 시장·군수·청장에게 보고한 공문서
현지실사 준비자료	1. 안전관련 자료 2. 안전교육대장 3. 안전점검일지 4.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근거자료 5. 기타 관련 증빙 자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 ①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시기, 안전점검 기관, 안전점검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0조 (수련시설 안전점검) ①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수련시설의 범위는 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개정 2008.2.29>

수련시설의 안전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장애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솔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상병자(傷病者)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비상연락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방책(防柵)·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안전모·안전띠·구명대 등 필요한 개인 보호장구를 갖추고,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세부적인 점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 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태풍 · 홍수 · 해일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13. 해당 수련시설 안에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 · 집회시설 및 숙박 · 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드위치 패널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제8조의2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련시설 안전점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의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1.28]

[별표 2의2] <신설 2008.1.28>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제8조의2 관련)

◆ 점검일시 :

◆ 점 검 자 : (인)

□ 안전관리체계 및 교육

구분	번호	항목별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지적사항
안전관리체계 및 교육	1	운영대표자의 책임 아래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점검 결과 기록유지)여부			
	2	수련시설에 입교 시 수련시설 내에서 안전사고 예방방법 및 교육기간 동안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지 여부			
	3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 운영 여부			
	4	유사시 신속대응을 위한 비상 구조구난 체제 구축과 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한 직원 교육의 실시 여부			
	5	시설 이용방법,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각 실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있는지 여부			

□ 토목부문

구분	번호	항목별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지적사항
진입로	1	수련시설은 비상시 소방차, 구급차 등의 접근이 용이한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는가?			
옹벽, 석축 및 담장	1	옹벽, 석축 및 담장 등의 붕괴 위험은 없는가?			
	2	옹벽 및 담장 기초부분에 침하된 부분이 있는가?			
	3	옹벽 부분에 배부름 현상이 있는가?			
사면	1	사면의 붕괴 위험은 없는가?			
	2	사면의 토사유출 우려는 없는가?			

배수로	1	배수로 덮개의 설치상태는 견고한가?			
	2	배수로의 덮개에는 발, 그 밖에 구두 굽(하이힐 등)이 빠질 수 있는 틈새가 있는가?			
□ 건축부문					
구분	번호	항목별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지적사항
구조	1	모든 건축물의 내·외벽에 균열은 없는가?			
	2	옥상 부분에 돌출된 파라펫(parapet) 및 난간의 설치상태는 견고한가?			
	3	난간의 간격은 적절한가?			
	4	불법으로 증·개축한 시설은 아닌가?			
	5	처마 및 모서리부분의 균열이나 낙하위험은 없는가?			
	6	천정, 벽체 및 바닥의 누수는 없는가?			
주출입구	1	주출입구는 장애인의 출입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가?			
	2	주출입구의 중앙 및 양측에 손가락보호대가 설치되어 있는가?			
현관 및 로비	1	각종 안내표시판이 적절하게 게시되어 있는가?			
	2	안내 데스크는 장애인을 고려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가?			
	3	안내 데스크 모서리 등은 충돌 시 부상을 예방·완화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복도	1	복도는 통행, 피난 및 방향전환 등을 하기에 적절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2	바닥은 턱, 요철 등으로 인한 높낮이 차이 때문에 통행 중 쉽게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는가?			
	3	바닥 마감재는 미끄럽지 않고 평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4	피난유도등, 피난유도표지 등은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5	복도에 통행 및 피난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의자, 자판기, 공중전화 등) 및 돌출물(못, 철물)이 있지 않은가?			
계단	1	중정형 계단의 경우 추락방지를 위한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는가?			

	2	추락방지용 그물망의 지지상태(철물고정, 철물의 녹슨 정도, 그물의 하중상태)는 양호한가?			
	3	계단에 통행 및 피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이 있지 않은가?			
	4	각 디딤판의 끝부분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논슬립(Non-slip)이 설치되어 있는가?			
생활관	1	소방법에 적합하게 완강기 등 피난시설을 준비하고 있는가?			
	2	피난이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창호에 안전바 설치유무 등)?			
	3	침구류 등의 위생상태는 양호한가?			
	4	각 실내 전반적인 청소상태는 양호한가?			
화장실	1	바닥은 넘어짐이나 미끄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되어 있는가?			
	2	화장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는 보호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가?			
양호실	1	비상구급약은 마련되어 있는가?			
	2	상주인원(양호교사, 간호사 등)에 의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3	상주인원 부재 시 비상연락이 가능한 연락망은 게시되어 있는가?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1	정기적인 보수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2	적재중량, 비상시 연락이 가능한 벨 등 각종 안전장치의 작동 상태는 양호한가?			
실내수영장	1	수심표시 등 안전표시판은 적절히 부착되어 있는가?			
	2	풀장에 설치된 각종 난간, 계단 및 사다리 등의 고정상태는 양호한가?			
	3	풀장 내·외부의 바닥은 미끄럼방지를 위한 재질로 설계되어 있는가?			
모험시설 및 옥외구조물	1	모험시설 상호 간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			
	2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상태나 안전망의 설치상태 등은 양호한가?			
	3	모험시설에 설치된 난간의 높이는 적정한가?			
	4	안전수칙 및 위험경고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가?			
	5	활동에 필요한 보호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6	안전요원, 그 밖의 수련시설 관리자의 적절한 교육 및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계, 전기 및 가스	1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 아래 전기시설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			
	2	보일러를 포함한 냉·난방기기는 관련법규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는가?			
	3	가스시설의 누설 체크는 관련법규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가?			
소방	1	소화기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가?			
	2	소화기의 충전량은 적절한가?			
	3	소화전 수압 호스의 연결 상태는 양호한가?			
	4	스프링클러 배관 및 밸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5	유도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7	사용하고 있는 전원이 차단될 경우 비상전원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8	완강기 및 피난사다리의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9	위험물 저장시설에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는가?			
	10	위험물 저장시설의 차광 및 환기상태는 양호한가?			
	11	화기시설과 가연성 물질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는가?			

▶ 지표 25. 안전관리 보험가입 여부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관련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보험증권 및 보험보상액 증빙자료, 보험금 예산 지출 내역 등 증빙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자료 평가, 평가위원단의 현장실사(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평가위원의 5단계 평정 척도 (원점수 범위 1~5점)
 - 매우미흡(1) : 시설안전관리보험 미 가입
 - 미흡(2) : 시설안전관리보험 1개 가입
 - 보통(3) : 시설안전관리보험 2개 이상 가입(차량보험도 해당)
 - 우수(4) : 시설안전관리보험 2개 이상(차량보험도 해당), 외부행사시 마다 여행자보험 가입
 - 매우우수(5) : 시설안전관리보험 2개 이상(차량보험도 해당), 외부행사시 마다 여행자보험, 지도자상해보험 가입
- ⑤ 평가요소
 - 시설안전관리보험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 규정에 근거한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통상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이라 함), 화재보험, 가스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구내식당이 있는 경우)을 말함
 - 시설에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증권의 내용 및 기간 확인
 -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 조성
 - 시설안전관리보험 중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대인손해배상이 아닌 대물손해배상만 가입하였을 경우 매우미흡(1점) 처리

제출 증빙자료 23	1. 보험가입증명서
현지실사 준비자료	1. 보험가입증명서

▶ 지표 26. 위생관리 수준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위생 및 청결 상태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위생관리대장 및 청결수준 현장 확인, 위생설비 관리대장 유무 및 관리주기 (화장실 등) 등 증빙자료
- ② 평가방법 : 평가위원단의 현장실사(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평가위원의 5단계 평정 척도 (원점수 범위 1~5점)
 - 매우미흡(1) : 관리대장 없고, 청결상태 매우 불량
 - 미흡(2) : 관리대장 부실하고, 청결상태 불량
 - 보통(3) : 관리대장 있고, 청결상태 보통
 - 우수(4) : 관리대장 및 청결상태 우수
 - 매우우수(5) : 관리대장 및 청결상태 매우 우수
- ⑤ 평가요소
 - 위생 및 청결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정도
 - 평가위원 재량평가
 - 시·군·구 및 안전점검 관계기관(식약청, 보건소 등)에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1점 감점

제출 증빙자료 24	1. 위생관련 자료(위생안전관리계획서) 2. 위생교육대장 3. 위생교육 참여 수료증
현지실사 준비자료	1. 위생관련 자료 2. 위생교육대장 3. 위생점검일지 4.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근거자료 5. 기타 관련 증빙 자료

▶ 지표 27.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조사 반영 여부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관은 프로그램 실시 후 만족도 조사 계획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운영 개선 및 개발에 활용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만족도 조사 관련 계획, 조사방법 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자료 평가, 평가위원단의 현장실사(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평가위원의 5단계 평정 척도(원점수 범위 1~5점)
 - 매우미흡(1) : 만족도조사 미실시
 - 미흡(2) : 전체 청소년 프로그램 중 50% 미만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미반영
 - 보통(3) : 전체 청소년 프로그램 중 만족도 조사 50% 이상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미반영
 - 우수(4) : 전체 청소년 프로그램 중 만족도 조사 50% 이상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반영
 - 매우우수(5) : 전체 청소년 프로그램 모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반영
- ⑤ 평가요소
 -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만족도 조사지를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가점 1점부여
 - 만족도 조사결과 반영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확인(예: 수정된 지도안 등)
 - 만족도 조사 실시 현황 및 결과분석 자료
 -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반영 노력과 실적

제출 증빙자료 25	1. 만족도 조사계획서 2. 만족도 조사 실적 자료
현지실사 준비자료	1. 만족도 조사계획서 2. 만족도 조사 실적 자료 3. 만족도 조사지 및 조사결과 기록 자료 등

▶ 지표 28. 프로그램 성과평가 실시 여부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관은 프로그램 평가 계획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운영 개선 및 개발에 활용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프로그램 성과평가 관련 계획, 평가방법 자료
- ② 평가방법 : 서면자료 평가, 평가위원단의 현장실사(자료내용 확인)
- ③ 평가기간 : 2011년 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평가위원의 5단계 평정 척도(원점수 범위 1~5점)
 - 매우미흡(1) : 전체 청소년 프로그램 중 10% 이하 평가 실시
 - 미흡(2) : 전체 청소년 프로그램 중 11~30% 평가 실시
 - 보통(3) : 전체 청소년 프로그램 중 31~50% 평가 실시
 - 우수(4) : 전체 청소년 프로그램 중 51~70% 평가 실시
 - 매우우수(5) : 전체 청소년 프로그램 중 71% 이상 평가 실시
- ⑤ 평가요소
 -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지를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가점 1점 부여
 - 학부모, 교사, 지도자 등에 의한 평가가 별도로 실시된 경우는 가점 1점 부여
 - 프로그램 평가계획서는 단위 프로그램별 혹은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평가계획 모두 인정함

제출 증빙자료 26	1. 프로그램 평가계획서 2.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결과 실적 자료
현지실사 준비자료	1. 프로그램 평가계획서 2.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결과 실적 자료 3. 프로그램 평가지 등

▶ 지표 29. 기관 구성원의 개선 노력 정도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구성원은 기관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해당 없음
- ② 평가방법 : 청소년수련관 직원 3인 이상에 대한 평가위원단의 현장실사 및 면담
- ③ 평가기간 : 2009년 1월 ~ 2011년 12월
- ④ 평점기준 : 평가위원 간 합의하여 평점 부여
- ⑤ 평가요소
 - 청소년수련관 직원들의 운영철학과 비전
 - 최근 3년간 운영개선노력 실적(청소년이용도, 프로그램운영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증명할 만한 자료)
 - 이용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 존중의 태도와 수준
 - 지역사회에 대한 협력과 지원 사업을 통한 지역 밀착을 위한 노력 정도

제출 증빙자료 27	1. 3개년동안 개선 및 발전 노력을 증명할 만한 자료
현지실사 준비자료	1. 3개년동안 개선 및 발전 노력을 증명할 만한 자료

▶ 지표 30. 기관장의 기관발전 노력 정도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관의 장은 지역사회 청소년과 기관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해당 없음
- ② 평가방법 : 청소년수련관의 장에 대한 평가위원단의 현장실사 및 면담
- ③ 평가기간 : 2009년 1월 ~ 2011년 12월
- ④ 평점기준 : 평가위원 간 합의하여 평점 부여
- ⑤ 평가요소
 -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수련관 경영철학과 비전
 - 최근 3년간 운영개선노력 실적(예산, 지도인력, 청소년이용도, 프로그램운영역량 비교 실적자료)
 - 이용 청소년에 대한 시설의 관심과 지원, 존중의 태도와 수준
 - 지역사회에 대한 협력과 지원 사업을 통한 지역 밀착을 위한 노력 정도

제출 증빙자료 28	1. 3개년 운영개선 노력 실적 증빙자료
현지실사 준비자료	1. 3개년 운영개선 노력 실적 증빙자료

▶ 지표 31. 특화사업(특화프로그램) 성과보고서

지표의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관의 지역 혹은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역점사업 혹은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① 평가자료 : 해당 청소년수련관이 제출한 1개의 특화사업(혹은 특화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보고서(본 평가는 5쪽 내외로 작성)
- ② 평가방법 : 특화사업(특화프로그램) 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서면평가
- ③ 평가기간 : 2011년 1월 ~ 12월
- ④ 평점기준 : 평가위원 간 합의하여 평점 부여
- ⑤ 평가요소
 - 지역적 특성의 반영 수준
 - 해당 기관의 장점이나 특성의 반영 수준
 - 특화사업(특화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노력 정도
 - 특화사업(특화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반응 수준

제출 증빙자료 29	1. 특화사업(특화프로그램) 성과보고서
현지실사 준비자료	1. 특화사업(특화프로그램) 성과보고서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1-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 평가편람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Ⅰ / 이기봉·김현철·윤혜순·송민경
- 11-R03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맹영임·조혜영·김민·김영호
- 11-R04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유진·김영지·김진호·이용고·조아미
- 11-R04-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소년공부방 현황보고서/ 이유진·김영지
- 11-R05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Ⅰ / 성윤숙·김영한
- 11-R05-1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Ⅱ : 한부모·조손가정을 중심으로 / 성윤숙·김영한
- 11-R06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 김기현·김창환
- 11-R07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Ⅱ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1-R0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조사Ⅱ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황진구·이해연·유성렬·박은미
- 11-R09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김경준·오해섭
- 11-R09-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의 지역사회참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김경준·오해섭
- 11-R09-2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측정 / 김경준·오해섭·정익중
- 11-R09-3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오해섭
- 11-R09-4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 훈련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오해섭
- 11-R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사업보고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 11-R1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기초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활동참여 실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서우석
- 11-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임희진·김현신
- 11-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김현신·강현철
- 11-R12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윤철경·이민희·박선영·박숙경·신인순

- 11-R12-1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 연구 / 박숙경·김소희·오세정
- 11-R1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최창욱·임영식·이인재·박균열·박병기
- 11-R13-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감수성 / 박균열·홍성훈·서규선·한혜민
- 11-R13-2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판단력 / 이인재·김남준·김항인·류숙희·윤영돈
- 11-R13-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동기화 / 박병기·변순용·김국현·손경원
- 11-R13-4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품성화 / 이인재·김남준·김항인·류숙희·윤영돈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 총괄보고서 / 안선영·김희진·박현준 (자체번호 11-R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 장미혜·정해숙·마경희·김여진 (자체번호 11-R21-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3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 취약위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 은기수·박건·권영인·정수남 (자체번호 11-R21-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김미숙·김지은·박정연 (자체번호 11-R2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이호근·김영문·정혜주 (자체번호 11-R2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Ⅰ : 2011 민주시민 역량실태 조사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3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Ⅰ :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 김태준·이영민 (자체번호 11-R23-2)

수 시 과 제

- 11-R14 창업·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한국-핀란드 비교연구 / 안선영·김희진
- 11-R15 한·중·일·미 교교생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 / 이경상·임희진·김진숙
- 11-R16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권일남·최창욱

- 11-R17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 / 황옥경 · 김영지
- 11-R18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 이유진 · 조윤오
- 11-R19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 이기봉 · 권순용 · 박일혁
- 11-R20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방안 연구 / 김기현 · 맹영임

수 탁 과 제

- 11-R25 청소년정책평가분석센터 / 김기현 · 최창욱 · 김형주
- 11-R26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윤철경 · 오해섭
- 11-R27 청소년 동아리활동 인증방안 연구 / 맹영임 · 조남익 · 손의숙
- 11-R28 2011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 보고서 / 김영지 · 김경준 · 성윤숙 · 이창호
- 11-R29 2011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29-1 2011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시설별 개별 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30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김승경
- 11-R31 장애청소년 대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유명화
- 11-R32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 · 조혜영
- 11-R32-1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개발 연구 / 양계민 · 조혜영
- 11-R3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시범사업 운영매뉴얼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3-1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사례집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4 학교부적응(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 윤철경 · 최인재 · 김윤나
- 11-R35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매뉴얼 개발 / 안선영 · 최창욱
- 11-R36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 개발 / 이유진 · 김영한 · 김형모
- 11-R37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조혜영 · 양계민 · 김승경
- 11-R38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 이경상 · 김기현 · 김가람
- 11-R39 미래세대 가치관 분석 및 대응방안 / 임희진 · 백혜정
- 11-R40 '공정사회 실현' 교교생 논술대회 / 오해섭
- 11-R41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 · 임희진 · 장근영 · 김혜영 · 황옥경
- 11-R42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 최창욱 · 김영지
- 11-R43 2011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 / 박수익 · 장근영 · 김형주
- 11-R44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안 연구 / 김희진 · 이해연 · 황옥경 · 이용교
- 11-R45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운영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11-R45-1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 · 오해섭 · 모상현 · 천정웅 · 김지혜 · 김명화 · 오정아 · 박경현 · 방진희
- 11-R45-2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김세광 · 박선영 · 유가예
- 11-R45-3 멘토링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 · 김경준 · 오해섭 · 박정배 · 진은설

- 11-R46 성인·청소년 세대 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6-1 청소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7 소년보호시설 인권상황 관련 의식조사 / 이유진
- 11-R4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장기종단 효과성연구Ⅱ / 장근영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1-S01 Becoming an Adult in South Korea(3/7)
- 11-S02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방안 워크숍(3/18)
- 11-S03 동기이론의 최근 경향(4/6)
- 11-S04 통계조사에서 무응답 문제와 가중치 작성(4/14)
- 11-S05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4/22)
- 11-S06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의 의의와 방안 탐색(4/25)
- 11-S07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4/28)
- 11-S08 2010 고유과제 연구 성과 발표 자료집(5/13)
- 11-S09 Youth's Perception on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5/12)
- 11-S10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관련 논의의 초점들(5/19)
- 11-S11 아동·청소년 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교육종단연구 2010(5/25)
- 11-S12 아동·청소년 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시 복지패널조사(6/2)
- 11-S1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및 지표체계 정립(5/25)
- 11-S14 사회복지시설인증제 도입방향 및 경과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방안을 위한 시사점 모색(5/27)
- 11-S15 방과후 서비스 현황과 종단조사(5/25)
- 11-S16 다문화 종단 연구 패널 연구 방법론 I (6/15)
- 11-S17 해외 평가 동향(6/20)
- 11-S18 청소년공부방 현장실사위원 워크숍(6/20)
- 11-S19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워크숍 II (6/24)
- 11-S20 학교문화선도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6/24)
- 11-S21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 (6/29)
- 11-S22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I (7/11)
- 11-S2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콜로키움 자료집Ⅱ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방안(7/28)
- 11-S24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과정과 현황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모색(8/9)
- 11-S25 2011년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2010 데이터분석 방법론 세미나 자료집(8/30)
- 11-S26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워크숍 자료집 : 시범사업 중간발표 및 워크숍(8/18, 19)

- 11-S27 청소년수련관 인증제 도입 방안(9/1)
- 11-S28 청소년문화의 집 인증제 도입 방안(9/2)
- 11-S29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 대안 관련 워크숍(9/19,20)
- 11-S30 국내외 청소년 도덕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현황과 사례(9/9)
- 11-S3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9/28,29)
- 11-S32 한중 관계의 미래: 한국과 중국 청년의 한중 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할 강화방안 한·중 국제 세미나(9/22)
- 11-S33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워크숍(9/30)
- 11-S3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10/12)
- 11-S35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10/17)
- 11-S36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11/1,2)
- 11-S37 청소년 활동개념 재정립에 관한 정책 세미나(10/26)
- 11-S38 2011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북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정책방향(10/27)
- 11-S39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4)
- 11-S4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11/4)
- 11-S4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콜로키움 자료집(11/2)
- 11-S42 미래세대 가치관 대응 방안(12/1)
- 11-S43 2011 한·중 청소년 정책 세미나
청소년 우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청소년 우선개발의 이념과 행동 (12/6)
- 11-S44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개발 성과보고회 및 '12년 시범사업 설명회(12/9)
- 11-S45 멘토링 운영 매뉴얼 및 교재 개발 연구 세미나(12/9)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6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6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63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 · 길은배 · 김 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종 · 이명옥 · 이은경 · 최순종 · 김영지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 · 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 장근영 · 임영식 · 정경은 · 조아미 · 정재현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기타 발간물

- NYPI YOUTH REPORT 12호 : 창의적 체험 활동(2010년12월)
- NYPI YOUTH REPORT 13호 : 소년원 교육 효과성 개선 방안(8월)
- NYPI YOUTH REPORT 14호 : 청소년 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8월)
- NYPI YOUTH REPORT 15호 :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9월)
- NYPI YOUTH REPORT 16호 :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개선방안 (9월)
- NYPI YOUTH REPORT 17호 :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18호 : 방화후돌봄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10월)
- NYPI YOUTH REPORT 19호 :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0호 :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1호 :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실태 조사(11월)
- NYPI YOUTH REPORT 22호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발전방안(11월)
- NYPI YOUTH REPORT 23호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발달권, 참여권(11월)
- NYPI YOUTH REPORT 24호 : 청소년의 가족의식·가정생활 실태조사(11월)

연구보고 11-R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 평가편람**

인 쇄 2011년 12월 21일

발 행 2011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2001. 8. 24. 제13-726호

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02)2272-1767 대표 김방지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

ISBN 978-89-7816-946-2

ISBN 978-89-7816-944-8(세트)

